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1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5.

발 의 자:조정훈·서천호·서지영

서명옥 · 최수진 · 정성국

김용태 · 인요한 · 박충권
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, 해당 구역에서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지정소매인,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라 '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'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,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,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8호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8호 중 "담배를"을 "담배(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"로, "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고등교육법」"을 "「고등교육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누구든지 학생의 금지행위 등) -----보건 · 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 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 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 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. 1. ~ 17. (생략) 1. ~ 17. (현행과 같음) 18. 「담배사업법」에 의한 지 18. ----정소매인, 그 밖에 담배를 판 -----담배(연초의 전 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 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 동판매기(「유아교육법」 제2 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. 이 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하 같다)를-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

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	「고등교육법」
구역은 제외한다)	
19. ~ 32. (생 략)	19. ~ 32. (현행과 같음)